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9호 2023. 4. 21(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57호 노암4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 남원시 고시 제2023-5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락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3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868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
- 남원시 공고 제2023-871호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13
- 남원시 공고 제2023-885호 공시송달공고-----2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3 - 57호

노암4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남 원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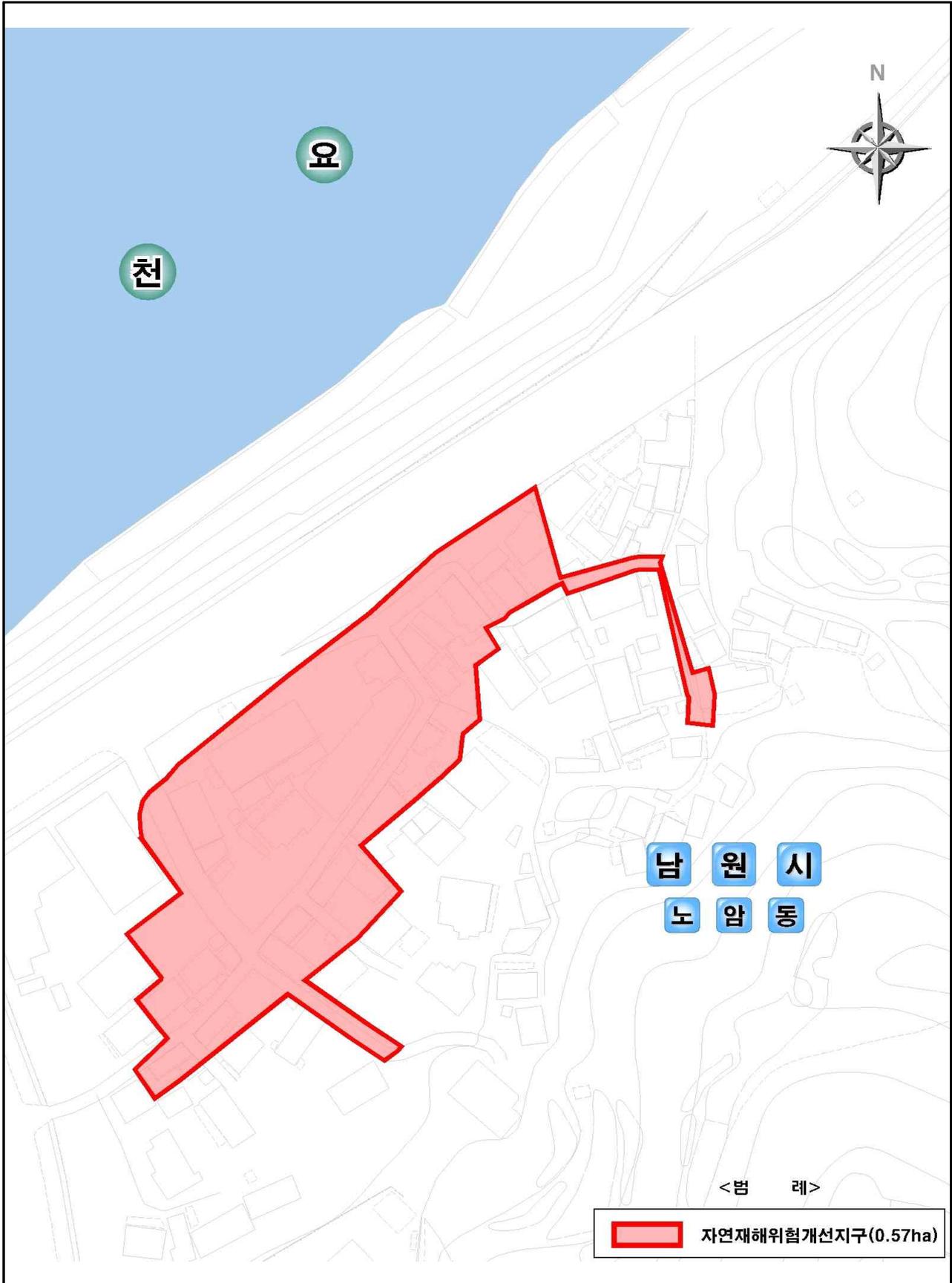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ha)		
노암4통 지구	남원시 노암동 807-21번지 일원	침수위험 지구	가	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에 위치한 요천 외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 및 역류발생 • 기존관거 통수능 부족으로 월류 발생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 노암4통



남원시 고시 제2023-5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월락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 고시된 월락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월락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결정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4월 21일

1.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⑤	월락공원	근린 공원	월락동 산47 일원	64,054	-	64,054	건설부고시 제539호 (85.12.9)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구분	시설	면 적 (m ²)			구성비 (%)	건 축 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 수			바 닥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4,054	-	64,054	100.0	1	증)1	2	86	증)4,800	4,886	86	증)4,800	4,886	
공 원 조 성 계획	합계	15,335	증)1,112	16,447	25.6	1	증)1	2	86	증)4,800	4,886	86	증)4,800	4,886	
	도로 및 광장	11,638	감)4,638	7,000	10.9	-	-	-	-	-	-	-	-	-	
	휴양 시설	903	-	903	1.4	1	-	1	86	-	86	86	-	86	팔각정
	공식 시설	-	증)5,750	5,750	9.0	-	증)1	1	-	증)4,800	4,800	-	증)4,800	4,800	보합화센터
	유치 시설	2,794	-	2,794	4.4	-	-	-	-	-	-	-	-	-	
기타 시설	녹지	48,719	감)1,112	47,607	74.4	-	-	-	-	-	-	-	-	-	

3.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건축물									비고		
구분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4,054	-	64,054	100.0	1	증)1	2	86	증)4,800	4,886	86	증)4,800	4,886			
합 계				15,335	증)1,112	16,447	25.6	1	증)1	2	86	증)4,800	4,886	86	증)4,800	4,886			
공원 시설	도로 광장	기정	변경	소계	11,638	감)4,638	7,000	10.8	-	-	-	-	-	-	-	-			
		1-1	1-1	산책로	654	감)304	350	0.5	-	-	-	-	-	-	-	-	-	위치변경 및 축소	
		1-2	1-2	산책로	809	감) 65	744	1.2	-	-	-	-	-	-	-	-	-	위치변경 및 축소	
		1-3	1-3	산책로	519	-	519	0.8	-	-	-	-	-	-	-	-	-		
		1-4	1-4	산책로	556	-	556	0.9	-	-	-	-	-	-	-	-	-		
		1-5	1-5	산책로	152	-	152	0.2	-	-	-	-	-	-	-	-	-		
		1-6	1-6	산책로	429	증)117	546	0.9	-	-	-	-	-	-	-	-	-	연장증가	
		1-7	1-7	산책로	99	-	99	0.2	-	-	-	-	-	-	-	-	-		
		2-1	2-1	지인입광장	2,273	-	2,273	3.5	-	-	-	-	-	-	-	-	-		
		2-2	2-2	지인입광장	1,761	-	1,761	2.7	-	-	-	-	-	-	-	-	-		
		2-3	-	오픈광장	4,386	감)4,386	-	0.0	-	-	-	-	-	-	-	-	-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따른 폐지	
		후야 시설	기정	변경	소계	903	-	903	1.4	1	-	1	86	-	86	86	-	86	팔각정
			3-1	3-1	섬터	196	-	196	0.3	-	-	-	-	-	-	-	-	-	
			3-2	3-2	팔각정	707	-	707	1.1	1	-	1	86	-	86	86	-	86	팔각정
교사 시설	기정	변경	소계	-	증)5,750	5,750	9.0	-	증)1	1	-	증)4,800	4,800	-	증)4,800	4,800			
	-	4-1	복합문화센터	-	증)5,750	5,750	9.0	-	증)1	1	-	증)4,800	4,800	-	증)4,800	4,800	신설		
유서 시설	기정	변경	소계	2,794	-	2,794	4.4	-	-	-	-	-	-	-	-	-			
	4-1	5-1	술이터	949	-	949	1.5	-	-	-	-	-	-	-	-	-			
	4-2	5-2	블루이터	492	-	492	0.8	-	-	-	-	-	-	-	-	-			
	4-3	5-3	타잔이터	357	-	357	0.6	-	-	-	-	-	-	-	-	-			
	4-4	5-4	정글이터	490	-	490	0.7	-	-	-	-	-	-	-	-	-			
	4-5	5-5	움직이터	506	-	506	0.8	-	-	-	-	-	-	-	-	-			
기타 시설	녹지			48,719	감)1,112	47,607	74.4	-	-	-	-	-	-	-	-	-			

4. 남원 도시관리계획(월락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공고 제2023 - 868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안 제15조제1항)

나.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 제시 등 규정 (안 제15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3 4. 20. ~ 2023. 5. 10. (20일간)**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yun9z@korea.kr), fax(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063-620-6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안 제15조제1항)

나.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 제시 등 규정 (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0-357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 ~ 2023. 5.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용역결과를”을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u>용역결과</u>를 시 홈페이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후단 신설></p>	<p>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 <u>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u> ----- -----.</p> <p>② ----- ----- ----- ----- <u>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u></p>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20-357)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
 - 또한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
 - ※ 행정효율규정 제5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는 이와 달리 규정한 사례가 일부 존재('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정보공개법 등은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
 -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연구결과 공개) ① 기관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연구결과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871호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남 원 시 장**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책무사항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제6조)
-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규정(안 제7조~제9조)
-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근거 규정(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4. 18. ~ 2023. 5. 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계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Fax(063-620-6747)
이메일(unitysk@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책무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 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안 제6조)
-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근거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 ~ 2023. 5.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반영)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하거나 연구 의뢰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7.>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23 - 8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주소지로 송달(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분 기한 내 납부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남원시장

1. 제 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본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21. ~ 2023. 5. 6.(15일간)
3. 공고대상

이름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비고
장*식 전북 남원시 죽향동 171-*		도로내 무단적치	도로법 제61조 및 제117조	과태료 50만원	

4. 공시송달내용

- 가.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남원시장(처분청) 또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를 통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전라북도 남원시 건설과(전화 : 063-620-6524, 팩스 : 063-620-6717)

※ 위 공고 대상자는 남원시청 건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